

세종 트리웨이드 리젠시(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HC1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나릿재마을 4단지)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7.11.2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02.01.입니다.(무주택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임)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하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라한다)은 「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소득세법」제104조의2에 따른 투기지구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제한 없이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제1항, 동조 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7.02.01.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신행정도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에 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공급하며, 신청접수 미달물량에 한해 일반 공급으로 전환되니, 반드시 확정된 물량을 확인하시어 청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신설) 대상 부서의 공무원 및 국책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신설)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가 신청할 경우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 및 「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무주택기간, 분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주택형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에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
-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1년이상 거주자)청약자 중 낙첨자는 기타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미만 거주자 포함)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1순위 세종특별자치시(1년이상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세대는 기타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하고, 기타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배분하여 차순위에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treesshade-r.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순위에서 가점제가 적용되는 공급신청자중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위를 부여하고(가점이 같은 경우는 추첨 진행)하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위를 부여하고 남는 경우 가점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하여 둘다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에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2you.com) 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해당청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해당청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해당청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해당청 제한 대상 주택 : 규칙 제3조제2항각 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 제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 해당청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 청약과열지역 : 서울·경기도·대전·충청·광명·전역 / 경남·경상·충남·충북·충청·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부산·창원·대구·경북·전북·전남·제주·제주도
 - ※ 투기과열지구 : 서울·경기도·대전·충청·광명·전역 /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대구·수원
 -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강화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당첨일로부터 1년 연장
 - 모든 지역 2순위 접수방법 변경 : 청약신청금 → 청약통장으로 신청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와 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모두 해당제한 규정에 따라 부적격당첨자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7. 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따라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함.)
- 분양권 전매 및 해당청 제한기간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 (이전기관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한 주택 포함)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에 따라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기당첨자 본인은 물론 기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은 본 아파트의 85㎡이하 당첨자인 경우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동안, 85㎡초과 당첨자인 경우 당첨일로부터 향후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만 해당]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매금지 및 해당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제1호(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이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101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주택법」 제65조 관련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중개자는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기관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필요한 제반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7.11.2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 408호 (2018.02.0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HC1블록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37층 5개동 총 52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주차대수 : 주거시설 804대, 비주거시설 150대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264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26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5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6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5세대 포함]

■ 공급규모 (단위 : m²,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m ²)						세대별 대지지분 (m ²)	공급세대수						해당동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	입주 예정 시기	
				세대별 공급면적			그밖의 공용면적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합계		계	이전기관 종사자등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민영 주택	2018000033-01	84.442A	84A	84.442	30.778	115.220	6.890	53.040	175.150	43.5892	40	20	4	4	4	1	7	401동,402동, 403동, 405동	-	2021년 03월
	2018000033-02	84.442	84A1	84.442	30.778	115.220	6.890	53.040	175.150	43.5892	63	32	6	6	6	2	11	401동,402동, 403동,404동, 405동	-	
	2018000033-03	84.619B	84B	84.619	30.507	115.126	6.900	53.150	175.176	43.6805	42	20	4	4	4	2	8	401동, 402동	-	
	2018000033-04	84.552C	84C	84.552	30.181	114.733	6.890	53.110	174.733	43.6459	12	7	-	-	-	-	5	403동, 405동	-	
	2018000033-05	84.552	84C1	84.552	30.181	114.733	6.890	53.110	174.733	43.6459	12	7	-	-	-	-	5	403동, 405동	-	
	2018000033-06	84.732D	84D	84.732	30.046	114.778	6.910	53.220	174.908	43.7389	52	26	6	6	6	2	6	401동, 402동	-	
	2018000033-07	84.732	84D1	84.732	30.046	114.778	6.910	53.220	174.908	43.7389	19	10	2	2	2	-	3	401동,402동, 404동	-	
	2018000033-08	84.957E	84E	84.957	30.353	115.310	6.920	53.360	175.590	43.8550	12	5	2	2	2	-	1	403동, 405동	-	
	2018000033-09	84.957	84E1	84.957	30.353	115.310	6.920	53.360	175.590	43.8550	12	5	2	2	2	-	1	403동, 405동	-	
	2018000033-10	95.852A	95A	95.852	33.795	129.647	7.810	60.210	197.667	49.4790	12	6	-	-	-	-	6	403동, 405동	-	
	2018000033-11	95.852	95A1	95.852	33.795	129.647	7.810	60.210	197.667	49.4790	54	27	-	4	-	2	21	401동,402동, 403동, 404동, 405동	2	
	2018000033-12	95.852B	95B	95.852	33.525	129.377	7.810	60.210	197.397	49.4790	56	28	-	6	-	2	20	403동, 404동, 405동	-	
	2018000033-13	95.562C	95C	95.562	33.480	129.042	7.800	60.030	196.872	49.3293	76	38	-	8	-	2	28	403동, 404동, 405동	-	
	2018000033-14	95.562	95C1	95.562	33.480	129.042	7.800	60.030	196.872	49.3293	46	23	-	6	-	2	15	401동,402동, 403동,404동,	-	

구분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 기준)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m ²)					세대별 대지비 (m ²)	공급세대수					해당동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	입주 예정 시기			
				세대별 공급면적			그밖의 공용면적			합계	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이전기 관 중사자 등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405동		
	2018000033-15	95.267D	95D	95.267	34.180	129.447	7.770	59.840	197.057	49.1771	14	7	-	2	-	-	5	403동, 404동	5	
	2018000033-16	95.761E	95E	95.761	36.474	132.235	7.810	60.150	200.195	49.4321	2	1	-	-	-	-	1	401동, 402동	-	
	2018000033-17	95.990F	95F	95.990	35.304	131.294	7.830	60.300	199.424	49.5503	2	1	-	-	-	-	1	403동, 405동	-	
	2018000033-18	95.106G	95G	95.106	35.426	130.532	7.750	59.740	198.022	49.0939	2	1	-	-	-	-	1	401동, 402동	-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3자리까지 표기하여 합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m², 세대, 천원)

주택형	동별 (라인별)	타입	공급 세대 수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분양가격			계약금(20%)		중도금(40%)				잔금 (40%)	
						대지비	건축비	계	1회 (10%)	2회 (10%)	1회 (10%)	2회 (10%)	3회 (10%)	4회 (10%)		
									계약시	2018-05-10	2018-12-10	2019-07-10	2020-04-10	2020-12-10	입주지정일	
84.442A	401동(3호라인) 402동(3호라인) 403동(3, 4호라인) 405동(3, 4호라인)	84A	40	8~15층	40	75,558	298,442	374,000	37,400	37,400	37,400	37,400	37,400	37,400	149,600	
84.442	401동(3호라인) 402동(3호라인) 403동(3, 4호라인) 404동(3, 4, 5호라인) 405동(3, 4호라인)	84A1	63	2층	2	75,558	264,442	340,000	34,000	34,000	34,000	34,000	34,000	34,000	34,000	136,000
				3층	5	75,558	268,442	344,000	34,400	34,400	34,400	34,400	34,400	34,400	34,400	137,600
				4층	9	75,558	271,442	347,000	34,700	34,700	34,700	34,700	34,700	34,700	34,700	138,800
				5층	9	75,558	275,442	351,000	35,100	35,100	35,100	35,100	35,100	35,100	35,100	140,400
				6~13층	38	75,558	282,442	358,000	35,800	35,800	35,800	35,800	35,800	35,800	35,800	143,200
84.619B	401동(3호라인) 402동(3호라인)	84B	42	17층이상	42	75,497	316,503	392,000	39,200	39,200	39,200	39,200	39,200	39,200	156,800	
84.552C	403동(1호라인) 405동(1호라인)	84C	12	8~14층	12	75,239	308,761	384,000	38,400	38,400	38,400	38,400	38,400	38,400	153,600	
84.552	403동(1호라인) 405동(1호라인)	84C1	12	2층	1	75,239	270,761	346,000	34,600	34,600	34,600	34,600	34,600	34,600	34,600	138,400
				3층	2	75,239	277,761	353,000	35,300	35,300	35,300	35,300	35,300	35,300	35,300	141,200
				4층	2	75,239	281,761	357,000	35,700	35,700	35,700	35,700	35,700	35,700	35,700	142,800
				5층	2	75,239	285,761	361,000	36,100	36,100	36,100	36,100	36,100	36,100	36,100	144,400
				6~8층	5	75,239	292,761	368,000	36,800	36,800	36,800	36,800	36,800	36,800	36,800	147,200
84.732D	401동(4호라인) 402동(4호라인)	84D	52	8~15층	16	75,268	308,732	384,000	38,400	38,400	38,400	38,400	38,400	38,400	153,600	
				17층이상	36	75,268	316,732	392,000	39,200	39,200	39,200	39,200	39,200	39,200	156,800	
84.732	401동(4호라인) 402동(4호라인) 404동(6호라인)	84D1	19	3층	1	75,268	277,732	353,000	35,300	35,300	35,300	35,300	35,300	35,300	35,300	141,200
				4층	3	75,268	281,732	357,000	35,700	35,700	35,700	35,700	35,700	35,700	35,700	142,800
				5층	3	75,268	285,732	361,000	36,100	36,100	36,100	36,100	36,100	36,100	36,100	144,400
				6~13층	12	75,268	292,732	368,000	36,800	36,800	36,800	36,800	36,800	36,800	36,800	147,200
84.957E	403동(2호라인) 405동(2호라인)	84E	12	8~14층	12	75,617	308,383	384,000	38,400	38,400	38,400	38,400	38,400	38,400	153,600	
84.957	403동(2호라인) 405동(2호라인)	84E1	12	2층	1	75,617	270,383	346,000	34,600	34,600	34,600	34,600	34,600	34,600	138,400	
				3층	2	75,617	278,383	354,000	35,400	35,400	35,400	35,400	35,400	35,400	141,600	

주택형	동별 (라인별)	타입	공급 세대 수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분양가격			계약금(20%)		중도금(40%)				잔금 (40%)	
						대지비	건축비	계	1회 (10%)	2회 (10%)	1회 (10%)	2회 (10%)	3회 (10%)	4회 (10%)		
									계약시	2018-05-10	2018-12-10	2019-07-10	2020-04-10	2020-12-10	입주지정일	
				4층	2	75,617	281,383	357,000	35,700	35,700	35,700	35,700	35,700	35,700	142,800	
				5층	2	75,617	285,383	361,000	36,100	36,100	36,100	36,100	36,100	36,100	144,400	
				6~8층	5	75,617	293,383	369,000	36,900	36,900	36,900	36,900	36,900	36,900	147,600	
95.852A	403동(5호라인) 405동(5호라인)	95A	12	8~14층	12	85,019	331,981	417,000	41,700	41,700	41,700	41,700	41,700	41,700	166,800	
95.852	401동(2호라인) 402동(2호라인) 403동(5호라인) 404동(2호라인) 405동(5호라인)	95A1	54	1층	2	85,019	284,981	370,000	37,000	37,000	37,000	37,000	37,000	37,000	148,000	
				2층	4	85,019	292,981	378,000	37,800	37,800	37,800	37,800	37,800	37,800	37,800	151,200
				3층	5	85,019	300,981	386,000	38,600	38,600	38,600	38,600	38,600	38,600	38,600	154,400
				4층	5	85,019	304,981	390,000	39,000	39,000	39,000	39,000	39,000	39,000	39,000	156,000
				5층	5	85,019	308,981	394,000	39,400	39,400	39,400	39,400	39,400	39,400	39,400	157,600
				6~15층	33	85,019	317,981	403,000	40,300	40,300	40,300	40,300	40,300	40,300	40,300	161,200
95.852B	403동(5호라인) 404동(2호라인) 405동(5호라인)	95B	56	15층	2	84,842	343,158	428,000	42,800	42,800	42,800	42,800	42,800	42,800	171,200	
				16층이상	54	84,842	352,158	437,000	43,700	43,700	43,700	43,700	43,700	43,700	174,800	
95.562C	403동(6호라인) 404동(1호라인) 405동(6호라인)	95C	76	3층	1	84,622	325,378	410,000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164,000	
				4층	1	84,622	330,378	415,000	41,500	41,500	41,500	41,500	41,500	41,500	166,000	
				5층	1	84,622	334,378	419,000	41,900	41,900	41,900	41,900	41,900	41,900	167,600	
				6~15층	16	84,622	343,378	428,000	42,800	42,800	42,800	42,800	42,800	42,800	171,200	
				16층이상	57	84,622	352,378	437,000	43,700	43,700	43,700	43,700	43,700	43,700	174,800	
95.562	401동(1호라인) 402동(1호라인) 403동(6호라인) 404동(1호라인) 405동(6호라인)	95C1	46	2층	3	84,622	303,378	388,000	38,800	38,800	38,800	38,800	38,800	38,800	155,200	
				3층	4	84,622	311,378	396,000	39,600	39,600	39,600	39,600	39,600	39,600	158,400	
				4층	4	84,622	316,378	401,000	40,100	40,100	40,100	40,100	40,100	40,100	160,400	
				5층	4	84,622	320,378	405,000	40,500	40,500	40,500	40,500	40,500	40,500	162,000	
				6~15층	31	84,622	328,378	413,000	41,300	41,300	41,300	41,300	41,300	41,300	165,200	
				95.267D	403동(3, 4호라인) 404동(3,4,5호라인)	95D	14	1층	5	84,888	298,112	383,000	38,300	38,300	38,300	38,300
				2층	5	84,888	307,112	392,000	39,200	39,200	39,200	39,200	39,200	156,800		
				3층	4	84,888	315,112	40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160,000		
95.761E	401동(1호라인) 402동(1호라인)	95E	2	1층	2	86,716	350,284	437,000	43,700	43,700	43,700	43,700	43,700	174,800		
95.990F	403동(5호라인) 405동(5호라인)	95F	2	34층	2	86,099	426,901	513,000	51,300	51,300	51,300	51,300	51,300	205,200		
95.106G	401동(4호라인) 402동(4호라인)	95G	2	36층	2	85,600	427,400	513,000	51,300	51,300	51,300	51,300	51,300	205,200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공통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제57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 조망권, 일조권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이며, 85㎡초과 분양주택은 부가가치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 계약자 선택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 및 발코니 확장 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등의 계약은 분양계

- 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대지비율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별도의 위치를 지정하여 할양하지 않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고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임.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함.(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임.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입주증 발급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 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협약은행과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이자 후불제로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선납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할인율(공급계약서 참조)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 내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사본 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폐기함.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84A	84A1	84B	84C	84C1	84D	84D1	84E	84E1	95A	95A1	95B	95C	95C1	95D	95E	95F	95G	합계
이전기관 종사자 등	20	32	20	7	7	26	10	5	5	6	27	28	38	23	7	1	1	1	264
일반 (기관추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50%)	2	3	2	-	-	3	1	1	-	-	-	-	-	-	-	-	-	13
	기타지역 거주자(50%)	2	3	2	-	-	3	1	1	-	-	-	-	-	-	-	-	-	13
다자녀가구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50%)	2	3	2	-	-	3	1	1	-	2	3	4	3	1	-	-	-	26
	기타지역 거주자(50%)	2	3	2	-	-	3	1	1	-	2	3	4	3	1	-	-	-	26
신혼 부부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50%)	2	3	2	-	-	3	1	1	-	-	-	-	-	-	-	-	-	13
	기타지역 거주자(50%)	2	3	2	-	-	3	1	1	-	-	-	-	-	-	-	-	-	13
노부모부양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50%)	1	1	1	-	-	1	-	-	-	1	1	1	1	-	-	-	-	8
	기타지역 거주자(50%)	-	1	1	-	-	1	-	-	-	1	1	1	1	-	-	-	-	7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세종시 1년 미만 거주자는 기타지역 거주자에 해당됨.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 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전부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계약체결 불가)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59 1150 2145 1445"> <thead> <tr> <th data-bbox="259 1150 734 1209">구 분</th> <th data-bbox="734 1150 1205 1209">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data-bbox="1205 1150 1675 1209">그 밖의 광역시</th> <th data-bbox="1675 1150 2145 1209">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59 1209 734 1268">전용면적 85㎡ 이하</td> <td data-bbox="734 1209 1205 1268">300만원</td> <td data-bbox="1205 1209 1675 1268">250만원</td> <td data-bbox="1675 1209 2145 1268">200만원</td> </tr> <tr> <td data-bbox="259 1268 734 1327">전용면적 102㎡ 이하</td> <td data-bbox="734 1268 1205 1327">600만원</td> <td data-bbox="1205 1268 1675 1327">400만원</td> <td data-bbox="1675 1268 2145 1327">300만원</td> </tr> <tr> <td data-bbox="259 1327 734 1386">전용면적 135㎡ 이하</td> <td data-bbox="734 1327 1205 1386">1,000만원</td> <td data-bbox="1205 1327 1675 1386">700만원</td> <td data-bbox="1675 1327 2145 1386">400만원</td> </tr> <tr> <td data-bbox="259 1386 734 1445">모든면적</td> <td data-bbox="734 1386 1205 1445">1,500만원</td> <td data-bbox="1205 1386 1675 1445">1,000만원</td> <td data-bbox="1675 1386 2145 1445">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p>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2.01.)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치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의 종사자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인정한 해당기관에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인하여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 대상기관이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확정된 날(이전계획고시일 또는 부지 계약일을 말함) 또는 설치된 날(업무개시일 또는 법인등기일을 말함)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한함. ※ 청약주택의 입주일(2021년 03월 예정) 이전에 퇴직 예정되어 있거나, 임기제 공무원 등 계약직 종사자로서 입주일 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자 등은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단, 청약주택의 입주일 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나 계약 연장 가능성이 있는 계약직 종사자는 대상기관장의 판단하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가 세종특별자치시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일반공급 등의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는 특별공급대상자에서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닌 자가 청약하여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자로 처리되어 계약할 수 없으며, 지정계약기간에 계약을 안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공급 1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특별공급을 받으실 수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관련 법령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방법(인터넷 신청만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한국주택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특별공급(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 신청방법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 접속(www.housing.or.kr) → 메인화면의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시스템(세종시)" 선택(http://apt.housing.or.kr)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선택 → 사업명 선택 →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서약서 동의 → 청약내용 입력 → 청약내용 확인 → 청약신청 제출(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완료</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시간은 09:00~17:3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이 있을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p>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추천기관 <table border="1" data-bbox="235 1061 1164 1372"> <thead> <tr> <th>구분</th> <th>관련법규</th> <th>해당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철거주택 소유자</td> <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철거주택 소유자</td> <td>LH 세종특별본부</td> </tr> <tr> <td>국가 유공자</td> <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2호, 제3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대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td> <td>국가보훈처</td> </tr> <tr> <td>장애인</td> <td>「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td> <td>각 지자체</td> </tr> <tr> <td>중소기업 근로자</td> <td>「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td> <td>중소벤처기업부</td> </tr> <tr> <td>군인</td> <td>「군인복지기본법」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td> <td>국군복지단</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철거주택소유자,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철거주택 소유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철거주택 소유자	LH 세종특별본부	국가 유공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2호, 제3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대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국가보훈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각 지자체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소벤처기업부	군인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군복지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형은 특별공급 신청일 당일 기관별 대상자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 선정함(장애인의 경우 각 기관의 우선순위자들이 추첨을 통해 순번에 따라 주택형을 선정하며, 순차적으로 차순위자들이 추첨을 통해 순번에 따라 선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 제한없이 신청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제1항, 동조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7.02.01.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함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철거주택 소유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철거주택 소유자	LH 세종특별본부																		
국가 유공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2호, 제3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대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국가보훈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각 지자체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소벤처기업부																		
군인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군복지단																		

구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2.01.)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 제한없이 신청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제1항, 동조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7.02.01.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성년 자녀수(태아 및 입양아 포함)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한다) 이하일 것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②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 제한 없이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제1항, 동조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7.02.01.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많은 자(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단,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②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자녀수를 산정할 때 이전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

구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2.01.)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1순위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 1순위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 세대주인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닌 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닌 자 ②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세대주 ③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신청시 그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 제한 없이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 동조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7.02.01.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함.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의 가점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입주선정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 선정하며, 동·호수 배정업무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호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기타(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접수기재)

배 점 표(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해당 사항	비 고
		기 준	점수		
계	65				
(1) 미성년 자녀수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태아,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2) 영유아 자녀수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태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3)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4) 무주택기간	20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5) 해당 시·도 거주 기간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해당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6)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항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주택소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내에 당첨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구분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고시)		
	3인이하	4인	5인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	4,884,448원이하	5,630,275원 이하	5,630,275원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861,338원이하	6,756,330원 이하	6,756,330원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6인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630,275원) + [1인당 평균소득(372,914원) * (N - 5)] (N:6인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함)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특별공급 당첨자 및 동·호수 결정 방법 및 유의사항**

당첨자 동·호수 결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함.
----------------------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취소되고 일반공급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 모두를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2.01.)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만 19세 미만인자 중 세대주 포함)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 제한없이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제1항, 동조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7.02.01.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함. • 순위별 신청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순위별 자격요건'에서 본인의 신청순위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우선공급대상 거주자의 거주기간이 있는 지역이므로 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한 장기복무 군인은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해야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세대 2건이상 신청하여 2건이상 당첨시 해당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됨. •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1년이상 거주자) 청약자 중 낙첨자는 기타지역(세종시 1년미만 거주자 포함)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또한 1순위 세종특별자치시(1년 이상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세대는 기타지역(세종시 1년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하고, 기타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 지역별 배분 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 순위에게 공급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음.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 중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합니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전용면적 85㎡ 이하주택은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선정하고,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은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50%를 추첨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 추첨제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선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 제약 / 재당첨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규칙 제3조제2항 각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기본양주택 당첨여부 및 재당첨 제한기간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 • 본 주택에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됨.(2순위로 청약 가능)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 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임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충족한 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당해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시 당해 거주지역으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폐지(2017.04.03.이후 모집공고 분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액 충족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가능함
--	--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청약 관련 예금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 이하 : 가점제(100%) 적용 / 85㎡ 초과 : 가점제(50%) 적용, 추첨제(50%) 적용 •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주인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 2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전국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자는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85㎡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자는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됨 ※ 가점제(50%) / 추첨제(50%) 적용.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자동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자로서 다음 ①~③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는 분은 본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③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과거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는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을(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대상으로 함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추첨제 적용(100%)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내의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재당첨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85㎡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 5년, 85㎡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 3년간 당첨제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85㎡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 3년, 85㎡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 1년간 당첨제한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별표2]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p> <p>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p> <p>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p>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p> <p>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 최초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p>
비 고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 가목2)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p>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8년이상 ~ 9년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이상 ~ 2년미만	4	9년이상 ~ 10년미만	20	
		2년이상 ~ 3년미만	6	10년이상 ~ 11년미만	22	
		3년이상 ~ 4년미만	8	11년이상 ~ 12년미만	24	
		4년이상 ~ 5년미만	10	12년이상 ~ 13년미만	26	
		5년이상 ~ 6년미만	12	13년이상 ~ 14년미만	28	
		6년이상 ~ 7년미만	14	14년이상 ~ 15년미만	30	
7년이상 ~ 8년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총점	84					
비고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 트리셰이드 리젠시 견본주택에서 관계자 입회하에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은 전산추첨, 기타 특별공급은 공개추첨 후 당첨자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는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추첨하여 배정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따라 각 순위별로 다음과 같이 당첨자를 선정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선정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선정 - 입주자선정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2.01.)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따라 급회 공급주택의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 내에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 등록증이 발급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자녀를 세명 이상 둔 자가 있는 경우에 최하층을 우선 배정 받을 수 있으나 최하층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람.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차상층을 말합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자 자녀를 세명 이상 둔자 사이에 경쟁이 있는 경우 만65세 이상인 자 혹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에게 우선배정 배정함.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의 방법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 예비입주자가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되고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1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하고,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당사 인터넷홈페이지(www.treeshade-r.com)에 공개함.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시 아파트투유(www.ap2you.com)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함.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비고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 2018.02.06.(화) 09:00 ~ 17:30	• 인터넷 청약	• 한국주택협회(www.housing.or.kr)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시스템(세종시, http://apt.housing.or.kr)	
	기 타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 2018.02.06.(화) 10:00 ~ 14:00	• 건본주택 방문접수 ※ 14시까지 입장한 분에 한하여 접수가능	• 세종 트리쉐이드 리젠시 건본주택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번지 일원	
		다자녀/노부모	• 2018.02.06.(화) 10:00 ~ 14:00			
		신혼부부	• 2018.02.06.(화) 10:00 ~ 14:00			
일반공급	1순위		• 2018.02.08.(목)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2순위		• 2018.02.09.(금) 08:00 ~ 17:30			

※ 기타(기관추천)특별공급, 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14:00까지 입장한 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

기타(기관추천)특별공급의 경우 16:00 추첨 진행, 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경쟁이 발생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취약자 등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함.(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증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t2you.com)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때(접수 장소에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접수 장소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비사업자의 경우(접수 장소에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접수장소에 비치)	- 접수장소

■ **일반공급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구 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공통	- 1순위: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대상자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특화서비스 「주택신청」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중앙회,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배우자 포함)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배우자, 본인 서명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관계확인서류 추가구비(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제3자 대리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시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처에 비치)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동호수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일시 : 2018.02.07.(수) 14:00 확인방법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시스템(세종시, http://apt.housing.or.kr)	일시 : 2018.02.19.(월) 확인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시 - 2018.03.05.(월)~2018.03.07.(수) 10:00~17: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번지 일원)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일시 : 2018.02.07.(수) 17: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개재 ※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일반공급	1순위	일시 : 2018.02.19.(월)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당사 홈페이지 (www.treeshade-r.com)		
	2순위			

-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인터넷 당첨자 발표 서비스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 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이용기간		2018.02.19.(월) ~ 2018.02.28.(수). (당첨자 발표 일로부터10일간)	
인 터 넷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 접속 → APT 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 조회 → 주택별 조회
전화(ARS)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코드 : 9→1→3)	금융결제원의 ARS 주택당첨조회서비스는 2017년 06월 15일부터 종료되었습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8.02.19.(월) 당첨자 발표일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전화(ARS)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VI 계약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18.03.05(월) ~ 2018.03.07.(수) 3일간, 10:00 ~ 16:00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번지 세종 트리쉐이드 리젠시 견본주택

-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계 약 시 구 비 사 항
		필수	추가	
본인 계약시	공통	○		- 계약금 입금 영수증 (당첨자 본인 명의)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함)]
		○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서명)
		○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 주민등록초본(1년 이상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 시)
			○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자에 한함)
			○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야통장순위(가입)확인서 1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이전기관	○	-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동·호수 발표일 이후 특별공급대상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한함) ※ 기관의 관인 날인된 서류에 한함
	최하층 우선배정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만65세이상인자 또는 세대구성원은 상기 공통 서류중 신분확인서류로 같음)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및 인감도장, 계약자의 주민등록증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양식은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민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는 동·호수 발표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을 제출하시기 바람.

※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됨.

■ 계약조건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이 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 아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향후 1년간 청약 당첨이 제한됨)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1순위 청약자격 제한대상,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와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른 예외 사항은 제외)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되면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해당첨 제한 대상 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인지세법에 따라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인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시에는 계약자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후 상호 정산함.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단지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행정구역,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름.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당사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단, 계약금 입금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이 경우 환불일까지의 이자는 인정하지 않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NH농협은행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301-0223-9753-71	주택도시보증공사 피에프금융2센터

■ **계약자 대출안내**

-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가 가능함.**
 - 계약체결 후 중도금 대출 약정일 이전에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승인 등)에 이의가 없는 계약자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실 계약자
-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받은 대출이자 대납관련 사항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 **중도금 대출이자는 분양가의 총 40%내에서 입주지정일(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대납해주며, 입주 시 납부된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따라 계약금 2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해당 주택건설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은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투기지구로서, 중도금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중도금대출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중도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중도금대출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기준으로 안내하는 것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정부정책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중도금대출을 알선하지 못할 경우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조달하여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회차별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회차별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를 통보할 의무가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금융권의 대출 부적격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이자후불제)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 개시일 전일까지이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중도금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직접 해당 대출은행에 납부하여야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대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이자후불제)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며 제1금융권 지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니 제2금융권 이용에 따른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미신청” 또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당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중도금 대출 알선이 불가하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시기에 대출금을 계약자의 신용 및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대체하여 사업주체의 연대보증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분양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어 문제가 없는 경우에 대출실행 가능하며, 개인이 대출신청하지 않거나 신용 및 금융기관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출실행이 불가한 자는 개인이 중도금 납입일에 맞춰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입금하여야하며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함.

■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적용됨.

■ 입주예정일 : 2021년 03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길 것을 요청할 경우 사전 공지 후 앞당길 수 있으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함.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제세공과금을 계약자가 부담함.
- 추후 당사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열쇠불출일로부터)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열쇠불출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인테리어 공사시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관리비에치금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함.
- 계약자는 아파트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시는 그 승인일)과 분양대금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60일 이내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취득세 부과·징수기관에서 정한 비율이상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더라도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반드시 관련기관에 별도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며 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1), 용역원휴게실(1), 경비실(1), 경로당(1), 보육시설(1), 어린이놀이터(4), 스카이 커뮤니티(6), 공방갤러리(1), 작은도서관(1), 어린이도서관(1), 주민회의실(1), 골프 연습장(1), 스크린골프연습장(1), 맘스라운지(1), 주민운동시설 [화이트니스센터, GX룸] 등 주민공동시설 내 운동시설 및 집기류, 가구 등은 실제 시공시 수량 및 종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리 및 운영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진행됨.

Ⅶ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 가전기기, 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발코니 확장면적(m ²)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 금
			계약시	2018.05.10	입주지정일
84A	21.045	10,672,000	1,067,200	1,067,200	8,537,600
84A1	21.045	10,672,000	1,067,200	1,067,200	8,537,600
84B	33.510	12,734,000	1,273,400	1,273,400	10,187,200
84C	35.640	12,804,000	1,280,400	1,280,400	10,243,200
84C1	35.640	12,804,000	1,280,400	1,280,400	10,243,200
84D	28.528	10,891,000	1,089,100	1,089,100	8,712,800
84D1	28.528	10,891,000	1,089,100	1,089,100	8,712,800
84E	23.565	12,489,000	1,248,900	1,248,900	9,991,200
84E1	23.565	12,489,000	1,248,900	1,248,900	9,991,200
95A	24.540	14,557,000	1,455,700	1,455,700	11,645,600
95A1	24.540	14,557,000	1,455,700	1,455,700	11,645,600
95B	35.295	12,942,000	1,294,200	1,294,200	10,353,600
95C	32.788	9,738,000	973,800	973,800	7,790,400
95C1	32.788	9,738,000	973,800	973,800	7,790,400
95D	21.045	11,636,000	1,163,600	1,163,600	9,308,800
95E	35.482	9,238,000	923,800	923,800	7,390,400
95F	51.000	13,735,000	1,373,500	1,373,500	10,988,000
95G	46.875	13,678,000	1,367,800	1,367,800	10,942,400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NH농협은행	발코니확장(계약금, 중도금, 잔금)	301-0223-9866-71	주택도시보증공사 피에프금융2센터

- 무통장 입금시 등·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아파트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공사비를 납부해야 함.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에어컨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비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

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분의 외부 샤키는 외부 알루미늄 창호와 내측 PVC 창호의 이중창으로 설치되며 확장부분 플라스틱 창호는 확장 선택시 제공되며 알루미늄 창호는 기본제공됨. (창호의 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분의 외부 샤키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키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공간의 크기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재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 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옵션선택	에어컨 설치 적용실(실내기)	설치 모델명(제조사:엘지)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018.05.10	잔금 입주지정일
			실외기	실내기				
84A	옵션1(2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	RPUQ0300S2R	거실, RNW0720C2SP 침실1, RNW0320C2SP 침실2,3, RNW0200C2SP	3,094,000	309,400	309,400	2,475,200
	옵션2(3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	RPUQ0400S2R		4,160,000	416,000	416,000	3,328,000
	옵션3(4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3	RPUQ0500S2R		5,381,000	538,100	538,100	4,304,800
	옵션4(2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	RPUQ0300S2R		3,609,000	360,900	360,900	2,887,200
	옵션5(3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	RPUQ0400S2R		4,933,000	493,300	493,300	3,946,400
	옵션6(4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3	RPUQ0500S2R		6,412,000	641,200	641,200	5,129,600
84A1	옵션1(2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	RPUQ0300S2R	거실, RNW0720C2SP 침실1, RNW0320C2SP 침실2,3, RNW0200C2SP	3,094,000	309,400	309,400	2,475,200
	옵션2(3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	RPUQ0400S2R		4,160,000	416,000	416,000	3,328,000
	옵션3(4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3	RPUQ0500S2R		5,381,000	538,100	538,100	4,304,800
	옵션4(2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	RPUQ0300S2R		3,609,000	360,900	360,900	2,887,200
	옵션5(3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	RPUQ0400S2R		4,933,000	493,300	493,300	3,946,400
	옵션6(4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3	RPUQ0500S2R		6,412,000	641,200	641,200	5,129,600
84B	옵션1(2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	RPUQ0300S2R	거실, RNW0720C2SP 침실1, RNW0320C2SP 침실2,3, RNW0200C2SP	3,094,000	309,400	309,400	2,475,200
	옵션2(3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	RPUQ0400S2R		4,160,000	416,000	416,000	3,328,000
	옵션3(4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3	RPUQ0500S2R		5,381,000	538,100	538,100	4,304,800
	옵션4(2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	RPUQ0300S2R		3,609,000	360,900	360,900	2,887,200
	옵션5(3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	RPUQ0400S2R		4,933,000	493,300	493,300	3,946,400

구 분	옵션선택	에어컨 설치 적용실(실내기)	설치 모델명(제조사:엘지)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018.05.10	잔금 입주지정일
			실외기	실내기				
	옵션6(4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3	RPUQ0500S2R		6,412,000	641,200	641,200	5,129,600
84C	옵션1(2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	RPUQ0300S2R	거실, RNW0720C2SP 침실1, RNW0320C2SP 침실2,3, RNW0200C2SP	3,087,000	308,700	308,700	2,469,600
	옵션2(3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	RPUQ0400S2R		4,155,000	415,500	415,500	3,324,000
	옵션3(4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3	RPUQ0500S2R		5,378,000	537,800	537,800	4,302,400
	옵션4(2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	RPUQ0300S2R		3,603,000	360,300	360,300	2,882,400
	옵션5(3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	RPUQ0400S2R		4,928,000	492,800	492,800	3,942,400
	옵션6(4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3	RPUQ0500S2R		6,408,000	640,800	640,800	5,126,400
84C1	옵션1(2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	RPUQ0300S2R	거실, RNW0720C2SP 침실1, RNW0320C2SP 침실2,3, RNW0200C2SP	3,087,000	308,700	308,700	2,469,600
	옵션2(3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	RPUQ0400S2R		4,155,000	415,500	415,500	3,324,000
	옵션3(4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3	RPUQ0500S2R		5,378,000	537,800	537,800	4,302,400
	옵션4(2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	RPUQ0300S2R		3,603,000	360,300	360,300	2,882,400
	옵션5(3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	RPUQ0400S2R		4,928,000	492,800	492,800	3,942,400
	옵션6(4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3	RPUQ0500S2R		6,408,000	640,800	640,800	5,126,400
84D	옵션1(2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	RPUQ0300S2R	거실, RNW0720C2SP 침실1, RNW0320C2SP 침실2,3, RNW0200C2SP	2,941,000	294,100	294,100	2,352,800
	옵션2(3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	RPUQ0400S2R		4,012,000	401,200	401,200	3,209,600
	옵션3(4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3	RPUQ0500S2R		5,337,000	533,700	533,700	4,269,600
	옵션4(2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	RPUQ0300S2R		3,292,000	329,200	329,200	2,633,600
	옵션5(3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	RPUQ0400S2R		4,785,000	478,500	478,500	3,828,000
	옵션6(4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3	RPUQ0500S2R		6,368,000	636,800	636,800	5,094,400
84D1	옵션1(2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	RPUQ0300S2R	거실, RNW0720C2SP 침실1, RNW0320C2SP 침실2,3, RNW0200C2SP	2,941,000	294,100	294,100	2,352,800
	옵션2(3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	RPUQ0400S2R		4,012,000	401,200	401,200	3,209,600
	옵션3(4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3	RPUQ0500S2R		5,337,000	533,700	533,700	4,269,600
	옵션4(2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	RPUQ0300S2R		3,292,000	329,200	329,200	2,633,600
	옵션5(3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	RPUQ0400S2R		4,785,000	478,500	478,500	3,828,000
	옵션6(4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3	RPUQ0500S2R		6,368,000	636,800	636,800	5,094,400
84E	옵션1(2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	RPUQ0300S2R	거실, RNW0720C2SP 침실1, RNW0320C2SP 침실2,3, RNW0200C2SP	3,292,000	329,200	329,200	2,633,600
	옵션2(3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	RPUQ0400S2R		4,164,000	416,400	416,400	3,331,200
	옵션3(4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3	RPUQ0500S2R		5,501,000	550,100	550,100	4,400,800
	옵션4(2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	RPUQ0300S2R		3,808,000	380,800	380,800	3,046,400
	옵션5(3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	RPUQ0400S2R		4,936,000	493,600	493,600	3,948,800
	옵션6(4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3	RPUQ0500S2R		6,531,000	653,100	653,100	5,224,800
84E1	옵션1(2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	RPUQ0300S2R	거실, RNW0720C2SP 침실1, RNW0320C2SP 침실2,3, RNW0200C2SP	3,292,000	329,200	329,200	2,633,600
	옵션2(3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	RPUQ0400S2R		4,164,000	416,400	416,400	3,331,200
	옵션3(4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3	RPUQ0500S2R		5,501,000	550,100	550,100	4,400,800
	옵션4(2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	RPUQ0300S2R		3,808,000	380,800	380,800	3,046,400
	옵션5(3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	RPUQ0400S2R		4,936,000	493,600	493,600	3,948,800
	옵션6(4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3	RPUQ0500S2R		6,531,000	653,100	653,100	5,224,800
95A	옵션1(3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 주방	RPUQ0500S2R	거실, RNW0600C2SP 주방, RNW0320C2SP 침실1, RNW0400C2SP 침실2, RNW0200C2SP 침실3, RNW0230C2SP	4,450,000	445,000	445,000	3,560,000
	옵션2(4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 주방	RPUQ0500S2R		5,382,000	538,200	538,200	4,305,600
	옵션3(5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3, 주방	RPUQ0600S2R		6,380,000	638,000	638,000	5,104,000
	옵션4(3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 주방	RPUQ0500S2R		5,223,000	522,300	522,300	4,178,400
	옵션5(4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 주방	RPUQ0500S2R		6,413,000	641,300	641,300	5,130,400
	옵션6(5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3, 주방	RPUQ0600S2R		7,668,000	766,800	766,800	6,134,400
95A1	옵션1(3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 주방	RPUQ0500S2R	거실, RNW0600C2SP 주방, RNW0320C2SP 침실1, RNW0400C2SP	4,450,000	445,000	445,000	3,560,000
	옵션2(4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 주방	RPUQ0500S2R		5,382,000	538,200	538,200	4,305,600

구 분	옵션선택	에어컨 설치 적용실(실내기)	설치 모델명(제조사:엘지)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018.05.10	잔금 입주지정일
			실외기	실내기				
	옵션3(5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3, 주방	RPUQ0600S2R	침실2, RNW0200C2SP 침실3, RNW0230C2SP	6,380,000	638,000	638,000	5,104,000
	옵션4(3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 주방	RPUQ0500S2R		5,223,000	522,300	522,300	4,178,400
	옵션5(4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 주방	RPUQ0500S2R		6,413,000	641,300	641,300	5,130,400
	옵션6(5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3, 주방	RPUQ0600S2R		7,668,000	766,800	766,800	6,134,400
95B	옵션1(3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 주방	RPUQ0500S2R	거실, RNW0600C2SP 주방, RNW0320C2SP 침실1, RNW0400C2SP 침실2, RNW0200C2SP 침실3, RNW0230C2SP	5,491,000	549,100	549,100	4,392,800
	옵션2(4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 주방	RPUQ0500S2R		5,560,000	556,000	556,000	4,448,000
	옵션3(5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3, 주방	RPUQ0600S2R		6,633,000	663,300	663,300	5,306,400
	옵션4(3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 주방	RPUQ0500S2R		5,356,000	535,600	535,600	4,284,800
	옵션5(4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 주방	RPUQ0500S2R		6,591,000	659,100	659,100	5,272,800
	옵션6(5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3, 주방	RPUQ0600S2R		7,921,000	792,100	792,100	6,336,800
	95C	옵션1(3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 주방		RPUQ0500S2R	거실, RNW0600C2SP 주방, RNW0320C2SP 침실1, RNW0400C2SP 침실2, RNW0200C2SP 침실3, RNW0230C2SP	4,596,000	459,600
옵션2(4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 주방	RPUQ0500S2R	5,479,000	547,900		547,900	4,383,200
옵션3(5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3, 주방	RPUQ0600S2R	6,670,000	667,000		667,000	5,336,000
옵션4(3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 주방	RPUQ0500S2R	5,369,000	536,900		536,900	4,295,200
옵션5(4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 주방	RPUQ0500S2R	6,509,000	650,900		650,900	5,207,200
옵션6(5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3, 주방	RPUQ0600S2R	7,958,000	795,800		795,800	6,366,400
95C1	옵션1(3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 주방	RPUQ0500S2R	거실, RNW0600C2SP 주방, RNW0320C2SP 침실1, RNW0400C2SP 침실2, RNW0200C2SP 침실3, RNW0230C2SP	4,596,000	459,600	459,600	3,676,800
	옵션2(4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 주방	RPUQ0500S2R		5,479,000	547,900	547,900	4,383,200
	옵션3(5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3, 주방	RPUQ0600S2R		6,670,000	667,000	667,000	5,336,000
	옵션4(3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 주방	RPUQ0500S2R		5,369,000	536,900	536,900	4,295,200
	옵션5(4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 주방	RPUQ0500S2R		6,509,000	650,900	650,900	5,207,200
	옵션6(5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3, 주방	RPUQ0600S2R		7,958,000	795,800	795,800	6,366,400
95D	옵션1(3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 주방	RPUQ0500S2R	거실, RNW0600C2SP 주방, RNW0320C2SP 침실1, RNW0400C2SP 침실2, RNW0200C2SP 침실3, RNW0230C2SP	4,756,000	475,600	475,600	3,804,800
	옵션2(4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 주방	RPUQ0500S2R		5,527,000	552,700	552,700	4,421,600
	옵션3(5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3, 주방	RPUQ0600S2R		6,583,000	658,300	658,300	5,266,400
	옵션4(3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 주방	RPUQ0500S2R		5,529,000	552,900	552,900	4,423,200
	옵션5(4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 주방	RPUQ0500S2R		6,557,000	655,700	655,700	5,245,600
	옵션6(5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3, 주방	RPUQ0600S2R		7,871,000	787,100	787,100	6,296,800
95E	옵션1(3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 주방	RPUQ0500S2R	거실, RNW0600C2SP 주방, RNW0320C2SP 침실1, RNW0400C2SP 침실2, RNW0200C2SP 침실3, RNW0230C2SP	4,452,000	445,200	445,200	3,561,600
	옵션2(4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 주방	RPUQ0500S2R		5,445,000	544,500	544,500	4,356,000
	옵션3(5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3, 주방	RPUQ0600S2R		6,758,000	675,800	675,800	5,406,400
	옵션4(3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 주방	RPUQ0500S2R		5,224,000	522,400	522,400	4,179,200
	옵션5(4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 주방	RPUQ0500S2R		6,475,000	647,500	647,500	5,180,000
	옵션6(5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3, 주방	RPUQ0600S2R		8,046,000	804,600	804,600	6,436,800
95F	옵션1(3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 주방	RPUQ0500S2R	거실, RNW0600C2SP 주방, RNW0320C2SP 침실1, RNW0400C2SP 침실2, RNW0200C2SP 침실3, RNW0230C2SP	4,260,000	426,000	426,000	3,408,000
	옵션2(4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 주방	RPUQ0500S2R		5,234,000	523,400	523,400	4,187,200
	옵션3(5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3, 주방	RPUQ0600S2R		6,227,000	622,700	622,700	4,981,600
	옵션4(3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 주방	RPUQ0500S2R		5,033,000	503,300	503,300	4,026,400
	옵션5(4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 주방	RPUQ0500S2R		7,016,000	701,600	701,600	5,612,800
	옵션6(5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3, 주방	RPUQ0600S2R		7,515,000	751,500	751,500	6,012,000
95G	옵션1(3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 주방	RPUQ0500S2R	거실, RNW0600C2SP 주방, RNW0320C2SP 침실1, RNW0400C2SP 침실2, RNW0200C2SP 침실3, RNW0230C2SP	4,560,000	456,000	456,000	3,648,000
	옵션2(4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 주방	RPUQ0500S2R		5,432,000	543,200	543,200	4,345,600
	옵션3(5개소)(일반형)	거실, 침실1,2,3, 주방	RPUQ0600S2R		6,811,000	681,100	681,100	5,448,800
	옵션4(3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 주방	RPUQ0500S2R		5,333,000	533,300	533,300	4,266,400
	옵션5(4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 주방	RPUQ0500S2R		6,462,000	646,200	646,200	5,169,600
	옵션6(5개소)(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2,3, 주방	RPUQ0600S2R		8,099,000	809,900	809,900	6,479,200

■ 시스템 에어컨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NH농협은행	시스템에어컨(계약금, 중도금, 잔금)	301-0223-9866-71	주택도시보증공사 피에프금융2센터

- 천장 카세트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부가세포함)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 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확장 / 비확장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안방, 침실, 거실은 천정형 에어컨 기준으로 냉매 매립 배관이 시공되며, 일반 스탠드형 에어컨은 기동식 구조 특성상 설치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기관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가전제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옵션선택	가전기기 사양	설치 모델명(제조사:엘지)	옵션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2018.05.10	입주지정일
84 공용	BIS냉장고	흡바형	R-L712JCS	5,300,000	530,000	530,000	4,240,000
		디스펜서형	R-L692JYS	6,800,000	680,000	680,000	5,440,000
	의류건조기+건조기장	9kg, 히트펌프식	RH9WA	2,150,000	215,000	215,000	1,720,000
	드럼세탁기	14kg	F14WQW	890,000	89,000	89,000	712,000
	하이브리드 전기레인지	하이라이트+인덕션	BEH3G1	880,000	88,000	88,000	704,000
95 공용	BIS냉장고	흡바형	R-L712JCS	5,300,000	530,000	530,000	4,240,000
		디스펜서형	R-L692JYS	6,800,000	680,000	680,000	5,440,000
	의류건조기+건조기장	9kg, 히트펌프식	RH9WA	2,150,000	215,000	215,000	1,720,000
	드럼세탁기	14kg	F14WQW	890,000	89,000	89,000	712,000
	하이브리드 전기레인지	하이라이트+인덕션	BEH3G1	880,000	88,000	88,000	704,000

■ 가전제품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NH농협은행	가전옵션(계약금, 중도금, 잔금)	301-0223-9866-71	주택도시보증공사 피에프금융2센터

- 가전기기 BIS냉장고, 의류건조기, 드럼세탁기, 하이브리드 전기레인지 옵션(이하 가전기기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선택할 수 없으며, 가전기기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BIS냉장고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일반 냉장고는 설치된 가구보다 돌출될 수 있음.
- 확장 / 비확장에 따라 가전기기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가전기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사양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가전기기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가전기기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의류건조기를 선택 시 건조기장이 추가로 신청되며 건조기장은 본 공사시 제조사,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이브리드 전기레인지 가전기기 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일반 가스형 3구쿡탑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김치냉장고, 전기밥솥은 전시용으로 설치된 사항으로 본 공사시 적용되지 않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기관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제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임.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 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1) 바닥재	마루, 바닥 타일, 현관 디딤판 및 굽도리,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욕실/발코니/다용도실 타일(타일 붙임 몰탈 포함), 실외기실/대피실 에폭시 도장	수공간 바닥 방수 및 배수 슬리브 바닥난방, 시멘트 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2) 벽	벽지(초배포함) 및 벽체마감 일체, 아트월, 주방 벽 타일/인조석(타일 붙임 몰탈 포함), 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대피실 도장, 걸레받이	경량벽체, 콘크리트면처리(해당부위)
3) 천장	천장지, 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대피실 도장, 천장/우물천장 몰딩 및 마감재	천정틀위 석고보드, 콘크리트면처리(해당부위)
4) 일반가구	현관 신발장 및 창고장(해당 타입), 드레스룸장, 화장대(상판인조석 포함), 붙박이장, 복도장/선반, 수납선반 및 악세서리 일체	미설치
5) 주방	주방/식당 및 다용도실 가구 일체(상판, 싱크볼 및 악세서리 일체, 선반), 벽타일/인조석, 주방 가전류(가스쿡탑, 렌지후드), 수전류, 주방TV	소방관련시설, 주방배기 덕트, 설비배관(급,배수,난방), 정보통신배관, 배선 및 배선기구
6) 욕실	콘센트, 위생기구(양변기, 욕조, 세면대), 수전류, 액세서리류, 욕실 환풍기, 비데(부부욕실) 벽/바닥 타일, 천장재, 석재(세면대 뒷턱), 재료분리대, 욕실장, 샤워부스, 욕조하부틀, 코킹	도막방수 및 조적위 바탕처리,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배관 배선
7) 창호	목창호 문틀/문짝/문선/손잡이 및 경첩(하드웨어 일체)	플라스틱창호 내창, 알루미늄창호 외창, 현관 방화문, 디지털도어락, 다용도실 도어, 대피실 도어, 실외기실 도어/루버
8)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월패드, 매립등기구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m²,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84A	84A1	84B	84C	84C1	84D	84D1	84E	84E1	95A	95A1
금 액	28,171,000	28,171,000	28,148,000	28,052,000	28,052,000	28,063,000	28,063,000	28,193,000	28,193,000	32,787,000	32,787,000
구 분	95B	95C	95C1	95D	95E	95F	95G				
금 액	32,719,000	32,634,000	32,634,000	32,736,000	33,442,000	33,204,000	33,011,000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 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마이너스 옵션은 자재수급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람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 바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 자재(대리석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됨
-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함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 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에 맞추어 납부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주택소유에 따른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이 있을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시 유주택자로 간주함)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또는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일정기간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기타 유의사항

- 행정중심복합도시내 내 모든 아파트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아파트 외벽면에 건설업체명이나 브랜드명, 심볼과 로고를 표기할 수 없고, 마을이름과 주동번호만을 표기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명칭제정 자문위원회”에서 **2·4생활권은 “나릿재마을”**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등.

호수의 표기도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부상 주소체계에도 아파트 브랜드명이 표시되지 않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따라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단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 후 도배 등 마감부분에 한하여 재시공될 예정으로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실 대지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 허가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등에 따라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내 도로선형, 조경(수목,수경 시설물, 포장 등) 등 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등이 계약 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대지면적과 용적율, 건폐율은 아래와 같음**

구분	전체면적	공동주택면적	기부채납면적	상가면적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	113,417.654㎡	98,304.159㎡	0	15,113.495㎡	42.35%	272.44%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 **단지외부여건**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지구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본 지구는 선 시행된 사업지구이며 타 생활권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한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변 공원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 가능하며, 건본주택 및 기타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동측 갈매로 20m도로와 북측 수변공원, 제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서측 어반아트리움, 백화점 상업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소음 및 냄새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동측 약 50m 지점에 나성중학교, 나성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종소리 등 학교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아파트 북측 수변공원 넘어 도심형주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차후 건설공사로 인한 먼지 및 소음 진동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사업부지 주변으로 어반파크, 수변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어반파크의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디자인 및 마감재 등이 건본주택 및 기타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사업부지 북측, 북서측, 남측, 남서측으로 주출입구 앞쪽 및 사거리에 회전식 교차로가 형성될 예정임.
- 동측 어반파크, 북측 수변공원의 조성 주체는 LH이고 추후 조성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학교관련 유의사항**

- 초등학교 - '가칭' 나성초, 중학교 - 2학군, 고등학교 - 세종시 전체를 학군으로 하고 있음.
-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신설 '가칭' 나성초등학교임.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신설학교 개교시기 및 학생배치 관련 사항은 학교시설 설치공사 진행상황 및 각종 심의 결과 반영 등에 따라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사업시행자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 시기 조정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변경, 보류,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단지내부여건**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동입면에 설치되는 **단지홍보용 사인물(마을명칭, 동·호수표)의 경우 일부 세대 창호 및 외부 발코니에 걸쳐 시공될 수 있어 창호 및 발코니 일부분이 해당 사인물로 인해 외부 시야가 가려질 수 있으며 빗소리 등의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설계도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경관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계획되었으며, 추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주관하는 경관심의를 거쳐

- 색채 및 경관조명이 변경되어 질 수 있으니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외부 특화 계획에 따라 세대별로 외부 창호의 크기, 색상 및 모양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의 난방은 지역난방으로 공급되며, 안방, 침실, 거실은 천정형 에어컨 기준으로 냉매 매립 배관이 시공되며, 일반 스탠드형 에어컨은 기동식 구조 특성상 설치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401동, 402동 16층, 403동 15층, 404동 14층, 35층, 36층, 405동 14층 커뮤니티시설의 옥상과 녹화, 식재 등은 개별 사적 소유물이 아니므로 1층의 녹지공간과 같이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야하고 공공의 목적에 반해 임의로 훼손하거나 변형할 경우 변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
- **401동 29층, 402동 29층, 403동 27층, 404동 29층, 26층에 클라우드가든 시설의 옥상과 녹화, 식재 등은 개별 사적 소유물이 아니므로 1층의 녹지공간과 같이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야하고 공공의 목적에 반해 임의로 훼손하거나 변형할 경우 변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
- 전기 및 통신맨홀 등의 인입위치는 KEPCO(구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 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주차동선 및 지하층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에 의해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마감은 일부 커튼월 형식으로 시공 될 예정이며 주동 입면 계획에 따라서 같은 타입에서도 안방 및 침실의 창호 크기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모형 및 CG, 관련 설계도서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배치 및 사용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판매/근린생활시설 등의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경관조명 등 공용시설 조명과 상가조명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단지 내 출입구 및 도로 등은 아파트/근린생활시설 및 판매/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공동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 등의 권리행사는 일체 할 수 없고 별도의 대지구획은 불가함.
- 저층 세대의 경우 단지 및 판매/근린생활시설 이용자들이 의해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주차장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팬룸 및 DA에 의한 소음, 풍압 등에 의하여 불쾌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시설물(재활용 분리수거장, DA, 선큰, 자전거 보관소)등은 디자인 및 재질, 구조, 크기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DA는 401동 정면, 402동 후면, 403동 후면, 405동 정면에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방법상 취약 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한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DA위치는 차후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판매/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401동, 402동 저층부 세대는 후면 조망권 및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한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부대시설의 마감 및 시설의 경우 견본주택과 홍보자료는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이며 실제 설치되는 수량과 사양 및 기자재의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임의로 변경 및 추가요구를 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 및 판매/근린생활시설의 지붕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모형 및 공급단지 등에 표현된 장애인 점형 블록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서비스도로 및 보도 등의 경사도는 주변도로 및 인접대지의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외부 시설물 가로등, 가로수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며 공동으로 관리비를 정산함.
- 주거동 옥상, 스카이 커뮤니티는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건축심의) 권고에 따라 본 공사 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주 출입구에 위치한 저층부 일부 세대는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가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조경 식재 및 시설물, 주변 인접대지와 레벨차이가 있는 부분은 추후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문주 및 주차장 진입 상부 구조물은 본 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색상 및 패턴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 외부로 연결되는 보행자 출입로 및 1층 아파트 현관은 주변 대지 여건 및 판매/근린생활시설 디자인 특화에 따라 형상 및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옥상 구조물은 본 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커뮤니티 시설은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입면에 복합판이 설치되는 세대는 빗소리 등의 의해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건물은 판매/근린생활시설과 혼재되어 있어, 상행위로 인한 외부인과의 동선, 소음, 야간 조명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건물 주거부분은 지역난방이 공급되고, 냉방은 개별 냉방으로 공급되며 추가선택사항임.
- 본 복합시설의 주요용도는 아파트, 판매/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 상호 간섭으로 인한, 조망,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등의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함.
- 판매/근린생활시설 입점 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업체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차장은 지하 2층부터 지상1층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용과 판매/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는데 주거용 주차장은 지하 2층과 지하 1층 일부, 판매/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하 1층 일부로 구분되어 있음.
- 402동, 403동 측면에 설치되는 주거시설 및 판매/근린생활시설의 차량 출입구의 진입은 판매/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하며 진출시는 주거시설과 동일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거용 차량과 판매/근린생활시설 이용차량을 차로로 구분하여 계획되어 있음 (지하1층에서 주거시설의 출구가 판매/근린생활시설 주차장출구로 진입하게 계획되어 있으니 계약자는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401동, 405동 측면에 설치되는 주거전용 주차장 진출입구는 주거시설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 고층 건물임을 감안하여 풍동실험과 풍압테스트 등을 거쳐 설계가 되었으나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있을 수 있음.
- 판매/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속동과 인접한 등의 일부세대는 지상 또는 인근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헬름 및 기타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판매/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용으로 출입하는 주민보행출입로를 관련 도면들을 참조하여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여야 함.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 내에서 실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저층부 외벽마감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함.
- 주동 외부 특화계획에 따라서 세대별로 외부 창호의 입면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바람.
- 교통영향평가 변경에 따른 주출입구 차선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쓰레기분리수거장 6개소(주거 4개소, 비주거2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장소 및 크기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1층, 2층이 필로티로 구성된 동은 입구 상부에 보행자 안전시설인 캐노피가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2층 세대는 빗물에 의한 소음, 시야간섭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생활쓰레기 자동집하를 위하여 단지 내에 쓰레기 투입구(일반용, 음식물용)가 설치(투입구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되며, 별도의 쓰레기수거용기(일반용, 음식물용)는 비치되지 않음. 단, 초기 가동이 불가할 경우 쓰레기 수거용기(일반용, 음식물용)가 비치될 수 있음.
-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주민편의시설이므로 관리비(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쓰레기 투입구 사용 시기는 운영주체와 관리사무소가 협의하여 결정함.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층별 위치별로 입면상 창호 크기가 상이하오니 계약자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여야함.
- **이동통신 중계기는 401동(37층 옥상), 403동(E/V PIT실)에 설치 되어 있음.**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예상 위치>

*설치내역 : 지상광중계기

*설치장소 : 401동(37층 옥상), 403동(35층 옥상)각1식

*공 용 화 : 이동통신3사 공용화 및 친환경 공법 적용

- 단지 내 차량정차공간은 비상차량(학원차량) 및 소방차량 정차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 아파트는 다양한 평면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주거동 옥상은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건축심의) 권고에 따라 본 공사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단지 북측 근린공원 및 남측 수변공원과 접하는 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재질 및 형상이 변경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2개층**으로 구성되며, 지하주차장과 주동 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임.
- 지하주차장에 고효율 조명기구(LED 조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고,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환기 노출될 수 있음.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함.**
- 주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근린공원,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북측은 도로에 접해있으며, 도로변에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도로에 인접한 일부동에는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스카й커뮤니티 (Sky Community)는 401동, 402동 16층, 403동 15층, 404동 14층, 35층, 36층, 405동 14층 독립된 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으므로 계약 전 본인의 세대 주변의 시설물을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클라우드가든 (Cloud Garden)은 401동 29층, 402동 29층, 403동 27층, 404동 29층, 405동 26층에 독립된 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으므로 계약 전 본인의 세대 주변의 시설물을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공방갤러리, 스카й커뮤니티, 작은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맘스라운지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해 주고 해당 공간의 일부 시설, 집기류, 가구 등은 제공되지 않으며, 운영 및 관리는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 403동 정면 404동 정면, 후면 405동 후면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놀이터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403동 정면, 404동 후면에 경로당이 설치 될 예정이며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403동 정면, 404동 후면에 어린이집이 설치 될 예정이며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401, 402동 정면, 후면, 405동 정면 1,2층은 근린생활 시설 및 판매시설이 설치되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의하여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401동 정면에는 관리사무소가 설치 될 예정임.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단지의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시스템, 연료전지가 사용될 계획이며 제품 및 설치장소는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변경 될 수 있음.**
- **폐기물보관시설 및 크린넷 쓰레기 투입구위치는 6개소(주거 4개소, 비주거 2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 및 장소는 추후 크린넷 쓰레기 투입구 설치 및 조경계획에 따라 이동 변경 가능 하며 투입구는 지상 돌출물로서 일부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침해 및 냄새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함.**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급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지구단위계획지침상 단지 내 남, 북을 가로지르는 4~15M 공공보행통로와 동측·북측 도로 가로변에 전면공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시설물들은 공공의 보행자들을 위한 시설물인 관계로 단지 내에 설치된 시설물이라 하여 공공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심의를 거쳐 설치되므로,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커튼월 관련 유의사항

- 아파트 마감은 일반 골조벽체와 커튼월 형식으로 시공 될 예정이며 주동 입면 계획에 따라서 같은 타입에서도 각 실의 창호 크기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모형 및 CG, 관련 설계도서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외부 입면상 설치되는 커튼월 창호는 풍동실험, 풍압계산 결과에 따라서 디자인 및 색상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401동, 402동 커튼월 일부 구간에 설치되는 멀리언 바는 돌출되어 시공되어지며 이로 인하여 빗소리 등의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커튼월에 설치되는 창호는 케이스먼트형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일반 미서기창에 비하여 환기량이 부족 할 수 있음.
- 커튼월 유리색상은 건축심의 내용에 따라 시공되어지며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내부발코니세대 유의사항

- 카달로그 및 각종홍보물 상의 내부발코니(옥외공간)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하며, 해당 공간에 설치된 소품 및 식재 등은 연출용으로 실제 제공되지 않음.
- 내부발코니는 본 공사시 세부 마감 및 디테일 개선에 따라 형태 및 크기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인이 본 주택을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 유의사항 내용을 매수인에게 인지하도록 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제3자가 분양사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내부발코니가 있는 세대의 경우 하부에 다른 세대 등이 위치하므로 이용자에게 의해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내부발코니가 있는 세대의 경우 하부층 지붕에 의해 자연발생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유화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으며, 임의로 개조하거나 전용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관계 기관으로부터 시정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하부층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인의 출입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내부발코니가 형성되는 부위에는 우수 등의 처리를 위하여 선홍통 배관이 골조 등에 매입 시공되거나 노출되어 계획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하부층 세대의 물흐름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내부발코니 및 외부공간에는 무동력환기팬, 통기관 등 하부세대의 설비를 위한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내부발코니 측면 윈드가드 역할을 하는 커튼월 구조물(멀리언바 등)은 형태 및 재질 구조 등이 구조계산에 따라서 시공되므로 추후 커튼월 보강구조물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내부발코니 우수드레인 및 바닥배수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외부 난간대 재질 및 형태, 색상, 설치 높이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내부발코니 내 설치되는 조경 식재 및 시설물은 본 공사시 디자인, 재료, 구조 등은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음.
- 내부발코니 설치세대중 401동 95C1, 402동 95C1, 403동 95C, 95C1, 95B, 404동 95C, 95C1, 95B, 405동 95B, 95C, 95C1 타입은 실내측으로 출입문이 설치될 예정.
- 세대간 발코니는 401동(95A, 95C사이), 402동(95A, 95C사이), 403동(84C, 84E사이, 95A, 95C사이), 405동(84C, 84E사이, 95A, 95C사이)에 설치될 예정이며 소방활동, 외벽청소 및 보조점검을 위하여 공용계 단부위에서 테라스 측으로 출입문이 설치가 됨.
- 실외발코니타입형 세대의 테라스는 공용공간으로서 입주 후 청소 또는 하자보수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내부발코니는 공급면적에서 제외되었음.

IX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1.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여야 함.
(특히 김치냉장고, 세탁기는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
2.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3.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 후 도배 등 마감부분에 한하여 재시공될 예정으로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4.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①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②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③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④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강마루,타일)가 시공되지 않음.
5.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6.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7.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8. 본 공사 시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9. 가스배관의 수직연결은 공동계단실 내에 설치되어 공용홀 및 계단실에 배관이 노출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10. 84A. 84A1 침실2-3, 거실-안방, 안방드레스룸-침실3 벽체는 골조벽체가 아닌 건식고정 (THK140 공차포함)임.
84B 침실2-3, 거실-안방, 안방-알파룸, 알파룸-침실3 벽체는 골조벽체가 아닌 건식고정 (THK140 공차포함)임.
84C. 84C1 침실2-3, 거실-안방, 안방드레스룸-침실3 벽체는 골조벽체가 아닌 건식고정 (THK140 공차포함)임.
84D. 84D1 침실2-3, 거실-안방 벽체는 골조벽체가 아닌 건식고정 (THK140 공차포함)임.
84E. 84E1 침실2-3, 거실-안방 벽체는 골조벽체가 아닌 건식고정 (THK140 공차포함)임.
95A. 95A1 침실2-3, 거실-안방, 안방드레스룸-침실2 벽체는 골조벽체가 아닌 건식고정 (THK140 공차포함)임.
95B 침실2-가족실-침실3, 거실-안방 벽체는 골조벽체가 아닌 건식고정 (THK140 공차포함)임.
95C. 95C1 침실2-3, 침실2-가족실, 거실-안방 벽체는 골조벽체가 아닌 건식고정 (THK140 공차포함)임.
95D 침실2-3, 드레스룸-침실3, 거실-안방 벽체는 골조벽체가 아닌 건식고정 (THK140 공차포함)임.
95E 침실2-복도, 거실-안방 벽체는 골조벽체가 아닌 건식고정 (THK140 공차포함)임.
95F 침실2-3 벽체는 골조벽체가 아닌 건식고정 (THK140 공차포함)임.
95G 안방-드레스룸 벽체는 골조벽체가 아닌 건식고정 (THK140 공차포함)임.
11.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2.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음.
13. 본 공사 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됨.
14. 본 공사 시 일부 자재는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 될 수 있음.
15.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16.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17.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환기장치가 실외기실 상부에 천장 마감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임.
18. 본 공사 시 신발장에 위치에 분전함, 통신단자함이 설치되며 본공사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19.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온수분배기 하부는 별도의 마감되지 않음)
20. 신발장 하부 및 아일랜드하부, 팬트리 하부등 위치에 급수, 급탕 분배기가 설치되며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급수,급탕 분배기 하부는 별도의 바닥마감이 되지 않음)
21.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22.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음.
23. 주방가구 하부장 무늬 패턴은 본 공사시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23. 세대내부 포인트 타일 요철로 인해 줄눈마감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24. 주방 기본형과 확장형 레이아웃은 서로 상이하며, 주방확장시 바뀌는 부분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셔서 확인바람.
25. 기본형 세대의 경우 세대 내 창호 위치 및 크기는 차후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26. 일반형 바닥마감재는 강마루로 시공되어짐.

■ 세대/규격

1.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제공/전시품목

1.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2.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쿨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과 무관함.
4.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시 시공에서 제외

■ 견본주택 고지사항

1.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질 또는 동급의 성능이상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2.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3.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4.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음.
5.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 장치,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쿨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시공과 무관함.
7. 일부 세대 선택형 평면타입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8.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커뮤니티 시설

1.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2.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관련 시설은 입주시 변경될 수 있음.
4.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5.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음.
6. 어린이집, 경로당, 맘스라운지는 지상에 설치되며,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공방갤러리,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 은 지하1층에 설치됨.

X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격 공시 및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표시**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기밀 창호	적용	외기직접에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 1등급이상 적용
고효율 기자재	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평균효율 KS규격효율의 1.12배이상 제품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단위세대 내 현관에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 및 안정기는 형광램프 전용 안정기 선택 주차장조명기기 및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에 해당되는 LED조명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부속동 공용화장실에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설치
절수설비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 적용(세탁용 및 청소용 제외)
태양광시스템	적용	총용량 117.6KW (공동주택-태양광 65.6kw, 연료전지 46kw / 근린생활시설-연료전지 6kw)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트리레이드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P2 주상복합(공동주택))
건축주	㈜부원건설
준공(예정)일	2021년 03월 30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HCl북력
층 수	지하 2층, 지상 37층 / 528세대
연 면 적	113,417.654 m ²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 계 자	㈜상우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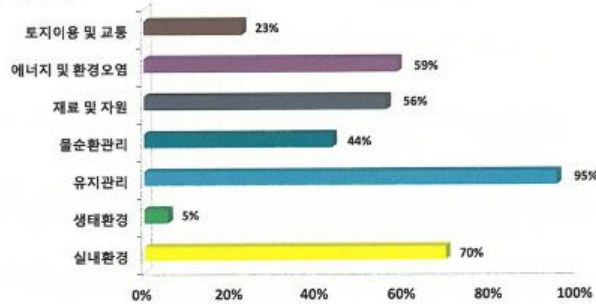
인증번호	제2017 - 1399호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17.12.28. ~ 사용승인일

[인증 등급]

인증등급	일반등급(복합건축물(공동주택+일반(비주거)))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평가]



2017년 12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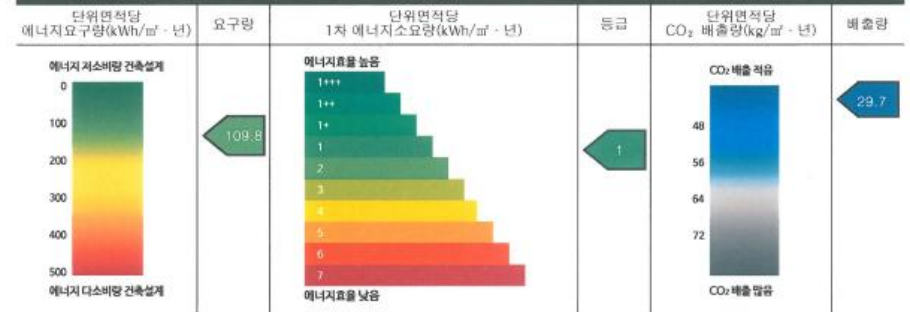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1. 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트리레이드(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P2 주상복합(공동주택))(공동주택)	인증번호	17-주-에-1-0567
준공연도	2021년 03월 30일	평가자	최수경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내성동)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층 수	지하 2층 지상 34~37층(5개동)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연 면 적	98304.159(m ²)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인증등급	
설계자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 ² ·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 ² ·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m ² ·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m ² ·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70.7	96.9	79.7	17.3
급탕	30.7	39.8	29.8	6.7
조명	8.5	8.1	22.2	3.8
환기		4.0	10.9	1.9
합계	109.8	148.7	142.6	29.7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에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재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설치된 [√] 설치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홈네트워크 관련 시스템 설치 항목

구 분	등급	AA등급		비 고
	기준	설치항목(1)	설치항목(2)	
항 목	1	배선	침입감지기	
	2	예비배관	차량통제기	
	3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전자경비시스템	
	4	통신배관실(TPS)	욕실폰	
	5	단지서버실	주방TV	
	6	폐쇄회로TV장비	일괄소등제어	
	7	가스밸브 제어기	디지털도어록	
	8	조명 제어기	엘리베이터호출연동제어	
	9	난방 제어기	현관도어카메라	
	10	현관방범 감지기		
	11	주동현관 통제기		
	12	원격검침 전송장치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감 리 회 사	감 리 금 액 (원)	비 고
건 축	(주)휴다임건축사사무소	2,567,193,000	부가가치세 포함
전 기	(주)이지건축	605,328,000	
소 방	현대공영(주)	297,000,000	
통 신	현대공영(주)	44,000,00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항 목	공 증	금 액 (원)	비 고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37,099,200,000	
	기간이자	457,849,031	
	그 밖의 비용	4,752,424,190	
계		42,309,473,221	
공사비	토목	11,962,027,505	
	건축	84,783,493,199	
	기계설비	11,332,447,110	
	그 밖의 공종	17,838,111,193	
	그 밖의 공사비	18,887,411,851	
계		144,803,490,858	
간접비	설계비	3,357,762,106	
	감리비	2,308,461,448	
	부대비	14,690,209,217	
계		20,356,432,771	
그 밖의 비용		2,390,734,833	
합계		209,860,131,683	

▣ 분양보증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125,882,400,000원	제06712018-101-0000200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중 보증사고·보증기간,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 보증사고의 정의(보증약관 제4조) :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함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 ◎ 보증사고일의 정의 : "보증사고일"이라 함은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음. 이하 같음.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함.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	상 호	(주)부원건설
	주 소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반산로26
	법인등록번호	200111-0027065
시공회사	상 호	(주)부원건설
	주 소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반산로26
	법인등록번호	200111-0027065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www.treeshade-r.com>

▣ 견본주택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번지 일원 / 분양문의 1899-0633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